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선발예정인원

임용구분	선발예정인원	주요업무	근무예정기관
청원경찰	27명	청사방호, 출입통제, 주·야간 순찰 집단민원 대처, 청사 내외 질서유지 등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소 등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필기시험

- 응시대상: 청원경찰 채용 응시자 전원
- 배점 및 문항형식: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 합격기준: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시험과목	세부구성	시험시간
민간경비론(20문항)	민간경비론(10문항)	40분(10:00~10:40)
	청원경찰법(10문항)	
일반상식(20문항)	한국사(10문항)	
	시정 주요시책 및 일반상식(10문항)	

나. 제2차 시험: 서류전형

- 1)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가산점 등 적격성 심사
- 2)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별도의 합격자 공지 없고,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나. 제3차 시험: 체력검정

- 1) 응시대상: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종목: 100m 달리기(10점), 제자리 멀리뛰기(10점), 윗몸일으키기(10점)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부적격)
남 자	100m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63 이상	262~ 258	257~ 255	254~ 250	249~ 246	245~ 243	242~ 240	239~ 230	229~ 210	210 미만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2 이상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7	36~ 30	30 미만
여 자	100m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4	21.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199 이상	198~ 194	193~ 189	188~ 185	184~ 181	180~ 177	176~ 173	172~ 169	168~ 160	160 미만
	윗몸일으키기 (회/60초)	45 이상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0	29~ 25	25 미만

- 3) 체력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다. 제4차 시험: 면접시험

- 1) 응시대상: 제3차 시험에 합격하고 인성검사에 응시한 사람

3. 응 시 자 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다. 신체조건

-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예정일(2024. 10. 11.) 기준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마.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 발표
6.10.(월) 09:00~ 6.11.(화) 18:00	6.10.(월)~6.17.(월) * 기간내 24시간	필기시험	6.27.(목)	7.20.(토)	8.13.(화)
		서류전형	해당 없음	8.13.(화)~ 8.30.(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체력검정	8.13.(화)	9.3.(화)	9.11.(수)
		인성검사	9.11.(수)	9.27.(금)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시험	9.11.(수)	10.11.(금)	10.21.(월)

가.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local.gosi.go.kr)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체력검정 일정·장소는 시험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체력검정 시행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다. 체력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1)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라. 면접시험 일정·장소는 시험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시행방법은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5. 응시원서 제출(인터넷 제출만 가능)

가. 제출방법 및 시간

1) 제출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제출

가) 원서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나)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제출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제출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2) 접수시간: 2024. 6. 10.(월) 09:00 ~ 6. 11.(화) 18:00

나. 응시수수료: 5,000원

1) 응시수수료 외에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됨

2) 원서 취소기간에 한하여 제출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함(처리비용 제외)

다. 유의사항

1)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2) 필기시험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함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제출시 가산점 적용에 관한 자격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 2) 가산점 적용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과목 만점의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3) 무도단증과 자격증은 높은 가산비율의 하나만을 인정하며, 취업지원 대상자는 무도단증 및 자격증 가산점과 합산하여 인정함
- 4) 무도단증은 불임의 단체에서 발급한 단증만 인정함
- 5) 자격증 정보를 잘못 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비율

대상		가산비율	적용범위
무도단증 소지자		2~3단: 과목별 만점의 3%	필기시험 적용
		4단 이상: 과목별 만점의 5%	
자격증 소지자	일반경비지도사	과목별 만점의 5%	
	응급구조사	1급: 과목별 만점의 3%	
		2급: 과목별 만점의 1%	
취업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시험단계별 적용

다. 취업지원대상자(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참고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가점비율 등은 응시자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서 확인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자격 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나. 접수마감 이후 응시원서 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 사실 발견 시, 추후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체력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임용승인(승인기관: 서울특별시경찰청)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마. 합격자 중 임용불가자(임용포기자, 임용승인 거부자 등) 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별도 공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바. 임용은 결원 발생에 따라 합격순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임용
- 사. 체력검정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 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 체력검정 시 복장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단, 위화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복장 불가)하고 스파이크 착용은 가능하나, 체육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 불가
- 아.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 바람
 - ※ 체력검정시험 당일 오전 시, 08:00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안내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시험 실시
-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인사과(전화 02-2133-5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도핑테스트 시행 안내

가. 도핑테스트 시행 안내

- 1) 체력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1)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한 약물 및 방법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1) 대상자는 전체 응시자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1) 채취된 시료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채취된 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3)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1)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던 경우에 한함)
- 3)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바. 기타 유의사항

- 1)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2)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원서접수 시 하여야 하며, 동의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3)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2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가. 금지약물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 ▶pentazocine ▶pethidine

나. 금지방법

- 1)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붙임3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 남 ☐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붙임4

무도단종 인정 단체 목록

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4.1.1.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자격 상실되었으므로 '23.12.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나.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64)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다.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